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에 대한 재판, 법과 정치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시금석 되어야

-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안전행정부부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 경찰청 집회시위관리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장 영 수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RO의 내란음모사건이 겹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식,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찬반논쟁 또한 날카로웠다. 그 이면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앞서 감정적인 선호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정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게 이 사건들에 대한 찬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최근 몇 달 동안은 세월호 사건에 가려져 있었지만, 8월 12일 이석기 의원 등의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을 계기로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에 대한 긴장감을 더해주기 위해서인지, 항소심판결에서는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제1심 판결을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고, 그것이 과연 향후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학도의 경우에도 적지 않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법학교수들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계속되더니, 이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의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의 불일치로 인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을 법리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근거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밝혀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작금의 논쟁들에서, 그리고 최근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경향을 지적하고,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선호를 모두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견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선입견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놓고 재판의 결과를 예상하려는 것도 -비록 자신의 성향을 전면으로 부각시킨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아닌 것이다.

사건의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 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어야 한다. 법규정과 법원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만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납득 가능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입각한 법적 판단, 즉 엄격한 증거에 기초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제1심과 제2심에서 공히 인정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증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엄격한 증거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법치의 기초이며, 사법부 독립이 인정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법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판례의 변경 또한 드물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노력과 가장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법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의할 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및 근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의 결

과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판단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 민주국가의 사법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재판의 결과에 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재판의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 된다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사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사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결코 저절로 형성되지 않으며, 쉽게 쌓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순간이면 족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과도한 연결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통진당이 당연히 해산되는 것도 아니고, 제2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통진당은 이제 해산될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문제의 핵심은 내란음모인지 아니면 내란선동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내지 RO)의 활동이 통진당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정당 차원에서 알고 지지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일탈행동인지에 있다. 통진당과의 연결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석기 의원의 유죄가 통진당의 해산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연결 고리가 확인될 경우에는 내란음모가 아닌 내란선동이라 하더라도 통진당의 해산사유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이 입증되지 못한다고 해서 통진당은 해산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북한과의 연결점이 확인되거나, 여타의 요소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가 확인될 경우에는 역시 해산사유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의 존재 여부도 엄격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그렇지만,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은 앞으로 우리 헌법사에 남을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 이 재판이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 되고, 그럼으로써 법과 정치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